[붙임 2]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006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양산단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품의 성능 분석·공정개선을 통해 신속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

□ 지원내용 : 양산단계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양산성능평가 및 공정개선 지원

세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원한도
1	양산성능평가 지원	○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 - 인증 획득 수수료 비용, 양산성능 평가, 시험 비용 등	최대 15백만원 (3개사 내외)
2	공정개선 지원	○ 양산성능 향상을 위한 효율성 개선, 생산성능향상 등 공정개선 지원 - 비용절감 기술개발, 품질개선 비용 등	최대 15백만원 (3개사 내외)

※ 단, 사업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 간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관련 평택 소재(본사, 등록 공장 등) 중소·벤처 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장(주된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평택시 소재이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분야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 기초소재, 제약,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항공, 조선, 기자재, 전력,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ICT 등

※ 이외 관련 분야는 [별첨 2] '소재·부품·장비 연계 업종' 자료 참고

※ 지원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지원제외	○ (제외기업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도소매 업종 등 ○ (중복수혜) 신청한 내용이 타 사업에서 수혜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책임자소속) 공고일 현재 총괄책임자가 사업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의무사항 불이행)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세금 납부 등 기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허위사항)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 (협약 위반) 지원기업 선정 후 사후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사업 기간 중 본사 관외 이전,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 ○ (기타사항) 제출서류, 목적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 양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 신규 인증이 아닌, 단순 인증 '갱신'인 경우 - 협약 종료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기업 의무	○ (이행보증보험)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지급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설정 -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며 사업비 소급 가능

3 지원내용

1 양산성능평가 지원 : 3개사 내외(최대 15백만원)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 성능 확인이 필요한 제품(또는 기술)에 대한 인증 및 성능 평가 지원

- (인증비) 국내·외 인증 관련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 수수료 등
- (평가·시험) 공인 평가기관을 통한 성능평가 및 인증 관련 시험 규격에 의거한 제품 시험·분석 비용

※ 한국인정기구(KOLAS)등록기관 및 [별첨 1]의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분석만 인정

※ [별첨 1] '국내·해외 인증분야 리스트' 참고

2 공정개선 지원 : 3개사 내외(최대 15백만원)

○ 양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및 생산공정 상의 효율성 개선, 성능향상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全 단계 내 공정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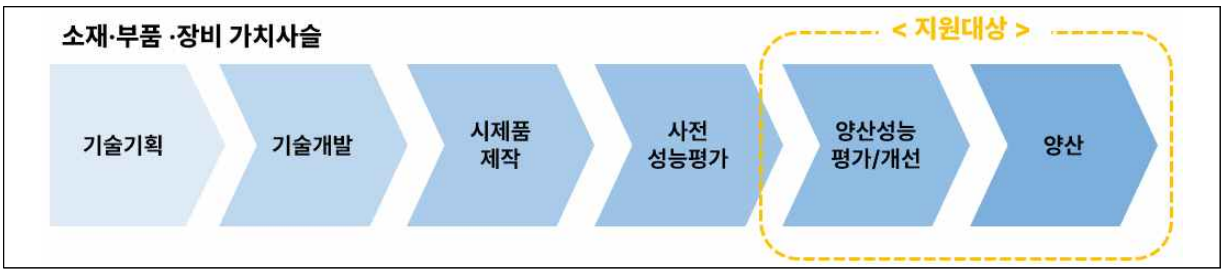

- (설비개선) 공정 개선 관련 SW 및 설비·장비의 개선 및 개발 비용
- (공정효율) 공정자동화 시스템 도입, 공정 프로세스 진단 등 양산성 향상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효율화 비용
- (기술분석·컨설팅) 공정최적화 시뮬레이션, 자동화장치 설계·분석 등 솔루션 도출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

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 중 20% 이상 기업부담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며, 기업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사업비 편성 예시(지원금이 1,500천원일 경우)

구분	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총 사업비
비중	80%	20%	100%
금액	1,500천원	375천원	1,875천원

※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 비중이 줄어든 경우, 2차 지원금이 기업부담금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해당 시)

※ 총 사업비 :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액(부가세 제외)

4 선정방안

□ 선정평가

○ (서류검토) 진흥원 담당자가 제출서류 적정성 및 자격요건 검토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발표 15분, 질의 10분)를 기반으로 평가

- 위원구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5인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 (심사기준)

- 양산성능평가 지원 :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 공정개선 지원 : 공정개선 목표, 개선 방안, 추진계획 및 절차 등

서류검토	▶	선정평가 (발표)	▶	성과평가 (발표)

5 추진일정

1 양산성능평가 지원

① 공고·접수 및 서류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③ 협약체결
`23. 02 ~ 04. 기업 → 진흥원 진흥원 담당자 서류검토		’23. 04. 발표평가 진흥원 담당자, 외부위원		’23. 04. ~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진흥원 ↔ 기업 협약체결

▼

⑥ 성과관리	◀	⑤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④ 지원금(100%) 지급
’23. 12. ~ 고용, 매출, 투자 등 후속 성과 관리 및 대응		’23. 12. 발표평가 진흥원 담당자, 외부위원		’23. 05. 진흥원 → 기업

2 공정개선 지원

① 공고·접수 및 서류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③ 협약체결
`23. 02 ~ 04. 기업 → 진흥원 진흥원 담당자 서류검토		’23. 04. 발표평가 진흥원 담당자, 외부위원		’23. 04. ~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진흥원 ↔ 기업 협약체결

▼

⑥ 2차 지원금(30%) 지급	◀	⑤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④ 1차 지원금(70%) 지급
’23. 12. 진흥원 → 기업		’23. 12. 발표평가 진흥원 담당자, 외부위원		’23. 05. 진흥원 → 기업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실적이 목표대비 현저히 미달하거나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정도가 진흥원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서 대비 위반될 때에는 사업비 환수조치(사업 중단) 가능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pipabiz.or.kr)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2023. 04. 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직인 날인) 접수

□ 제 출 처 : (18014)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 평택상공회의소 408호 기업지원팀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김희태 주임연구원(☎ 070-8874-7114, ✉ htkim@pipabiz.or.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양식 1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	
양식 2	사업계획서(해당 과제별)	원본 1부 사본 7부	양산성능평가 지원 또는 공정개선 지원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참여인력 전원
양식 4	청렴이행 서약서	원본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1부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 해당 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홈택스, 위택스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요시, 평택시 내 중소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추가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유의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및 후속사항 조치 가능(해당 시)

평가등급		평가등급의 판정기준	후속조치
성공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우	• 지원금 잔액 반납 및 과제종료
	보통	• 평균점수 70점 이상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실패	성실 실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사업비 집행실적에 문제가 없으나,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불성실 실패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 •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저조하고, 사업비 집행 실적에 중대한 회계적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진흥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 제한